

『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4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4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5월 2일

제16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이 홍 희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건립과 관련 『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』를 『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』로 전부 개정하여 구미시 근로자 종합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근로자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 (「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」를 「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)
- 근로자종합복지관 명칭 및 위치 (안 제3조)
 -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
 -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
-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 (안 제4조)
-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(안 제5조)
 -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- 위탁운영시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
-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內 도서관 운영(안 제13조 ~ 15조)
 - 도서열람·대출 (안 제13조)
 - 도서망실, 훼손 등 배상책임(안 제14조),
 - 기증도서 관리(안 제15조)
-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및 감액 규정 (안 제16조 ~ 제17조)
- 근로자종합복지관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 (안 제21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
 - 「근로복지기본법」
 - 「노동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」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 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
 -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
 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교 역

-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건립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근로자 종합복지회관과 통합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근로자 및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제출된 사항으로
-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한계를 분명하게 하였고 근로자문화센터의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센터 및 회관의 운영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근로복지 증진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
-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내 도서실 설치에 따른 도서열람 대출관리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도서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